

[별표 5]<개정 1997.3.24. 1999.3.18>

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(제12조 관련)

보 호 구 역	보호구역 도해(예시)
<p>1. 어장의 바다쪽 중앙보호구역은 각각 어장길이의 연장선 이내의 수면. 다만, 바다쪽 보호 구역의 길이는 550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2. 어장의 좌·우측보호구역과 어장의 바다쪽 중앙보호구역의 좌·우측보호구역의 총길이는 어장너비의 8배 이내로 하되, 2천6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그림 생략]</p> <p>※ 어장길이 : (가)기점에서 (나)기점 또는 (라)기점에서 (다)기점에 이르는 선</p> <p>※ 어장너비 : (가)기점에서 (라)기점 또는 (나)기점에서 (다)기점에 이르는 선</p>